

(9) 용 도	
(10) 용 법 및 용 량	
(11) 포 장 단 위	
(12) 보 존 기 준	
(13)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	(별첨)

위와 같이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의 결과를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인 (인)

귀하

구비서류 : 1. 검 체
2.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(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)

기재상 : 1. 의뢰인 및 제조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(1), (4)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주의사항	성명을 기재한다.	수 수료
		원

2903-83B
1982. 3. 3. 승인



自家品質基準 및 規格檢定基準의 處理指針

——國立保健院 告示 第3號에 따른 措置<1981.7.1>——

1. 趣 旨

이 指針은 食品衛生法 施行規則 第4條 第5項에서 自家品質基準 및 規格의 檢定基準은 “별표 1과 같다”가 刪除되고 “國立保健院長이 정하여 고시한다”로 改正(1983.1.15)됨에 따라 檢查機關의 적정한 檢定과 民願業務處理에 便宜를 畫謀하기 위한 것이다.

2. 目 的

이 指針은 食品 및 添加物의 自家品質基準

및 規格의 作成과 檢查機關의 檢定處理에 관하여 需要한 事項을 정하여 業務處理의 統一을 기함에 있다.

3. 對象品目

食品衛生法 第6條 第2項과 施行規則 第4條 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自家品質基準 및 規格을 設定하여야 할 品目은 다음의 製造業에서 製造하는 食品 및 添加物과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食品 및 添加物(다만, 食肉, 바

나나 등의 自然食品은 除外)로 한다.

- 가. 茶類製造業
- 나. インスタント食品 製造業
- 다. 營養등 食品製造業
- 라. 麵類製造業
- 마. 食用油脂製造業
- 바. 豆腐類製造業
- 사. 糖類製造業
- 아. 添加物製造業

4. 記載事項

用語, 記號 등은 原則的으로 食品등의 規格 및 基準과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(이하 “公典”이라 한다)에 준하여 記載項目 및 要領은 다음과 같다.

가. 製品名

製品의 名稱을 記載하되 가급적 原料物質과 관련하여 製品의 特性과 目的을 나타낼 수 있도록 表示한다.

나. 成分 및 配合比率

(1) 原料成分 및 物質은 原則的으로 公典에 수재된 規格品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物質(天然添加物등)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安全性에 관한 충분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社會通念上 食品의原料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.

(2) 配合比率은 百分率로 표시하되 百分率로 表示할 수 없을 경우에는 力價, 單位, %, 및 色價等으로 表示한다.

(3) 成分 및 配合比率의 百分率 表示에 있어서는 原料使用量의 合計를 100%로 하고 微量 添加하는 添加物등은 그 量을 記載하는 것 이 百分率 構成에 意味가 없으므로 品名만을 記載한다. 다만, 添加物일지라도 使用基準이

정하여진 것은 使用基準에의 適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使用量을 記載하되 百分率에는 包含시키지 않는다.

다. 起 源

起源은 그 原料成分 및 물질의 生成, 採取, 抽出, 反應 또는 製造, 加工 등의 과정을 말한다.

라. 製造方法

輸入品으로서 製造工程을 確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省略할 수 있다.

5. 基準 및 規格의 檢定基準

가. 成分規格

品質管理上 필요한 成分規格項目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. 다만, 製品의 特性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項目은 省略할 수 있으며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項目을 追加하여合理的으로調整할 수 있다.

(1) 食品의 成分規格

(가) 硫 素

食品公典의 제3.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중 1. 硫素項에 준한 것임.

(나) 重金屬

食品公典의 제3.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중 2. 重金屬項에 준한 것임.

(다) 異物試驗

食品公典의 제3.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중 5. 異物項에 준한 것임.

(라) 添加物

添加物中 위생상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保存料, 酸化防止劑, 人工甘味料, 타일色素를 規定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設定한다.

(마) 成分含量

① 製品의 特性에 따라 대체로 一般成分 등

을 다음 要領에 의하여 設定한다.

- (㊂) 茶類: 水分, 灰分등(液狀製品은 例外)
- (㊃) 인스탄트食品: 水分, 粗蛋白質등
- (㊄) 營養等食品: 水分, 粗蛋白質등(無機成分 및 비타민類를 添加하였을 경우에는 選定하여 設定함)
- (㊅) 麵類: 水分, 粗蛋白質등
- (㊆) 食用油脂: 現行 食用油 規格項目에 충족되며 食用精製加工油脂(硬化油, 分別油, 에스텔交換油)는 水分, 酸價 過酸化物價等
- (㊇) 두부類: 灰分, 粗蛋白質등
- (㊈) 糖類: 水分, 糖度(…糖으로서) 등
- (㊉) 輸入食品: 製品의 特性에 따라 設定함.
- (②) 成分含量은 다음과 같은 許容限度範圍內에서 設定함을 原則으로 한다.

成分含量(%), mg%, IU/100g등)	許容限度
30 이상	10%(+또는-)
20 이상	20%(+또는-)
10 이상	30%(+또는-)
5 이상	40%(+또는-)
1 이상	50%(+또는-)
1.0미만	90%(+또는-)

(①) 許容限度의 적용에 있어 水分, 灰分등과 같이 上限線을 規制한 것은 +%를 적용하고 粗蛋白質등과 같이 下限線을 規制한 것은 -%를 적용한다.

(④) 食用油의 比重등과 같이 下限 대지 上限值로 設定한 것은 위의 規定을 적용하지 않는다.

(⑤) 最低基準值(1.0미만) 이하의 微量成分에 있어서는 그 特殊性을 고려하여 위의 表의 規定에서 除外할 수 있다.

(⑥) 成分含量의 數値는 사사오입하여 表記한다.

(바) 其他

製品의 特性이 인정될 때 衛生的인 側面에서 적절히 設定한다. 예컨대 製品의 衛生管理

上 微生物項目의 設定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細菌 또는 大腸菌群을 設定할 수 있다.

(2) 添加物의 成分規格

(가) 硫素 및 重金屬의 許容限度는 食品添加物公典中 混合製劑의 規格에 준한 것임.

(나) 特성이 인정될 때 납, 카드뮴, 鹽化物, 黃酸鹽, PH, 比旋光度, 强熱殘留物 등의 項目을 設定한다.

6. 補完 및 是正

補完 및 是正措置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補 完

(1) 製品名

(가) 製品의 內容物과 相異할 때
(나) …()과 같이 2가지 製品으로 혼동하기 쉬울 때

(나) 混合製劑가 單一製品으로 誤認될 수 있을 때(添加物)
(라) 製造會社가 제시한 製品名을 그대로 表示하지 못한 경우(수입품)

(2) 成分 및 配合比率

(가) 成分內容이나 配合比率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맞지 않을 때

(나) 食品에 使用하는 原料나 添加物이 無水 또는 結晶, 精製 또는 結晶 등으로 分類되어 있는 성분이 그대로 記載되지 않았을 때

(3) 起 源

起源이 누락되었거나 未備할 때

(4) 製造方法

製造工程이 非衛生的이거나 불합리할 때

(5) 用途 및 使用量

食品添加物 規格基準의 使用基準에 맞지 않을 때

(6) 成分規格

必要한 項目이 누락되었거나 規格設定值가

檢討機關의 分析值 또는 提出된 資料와 比較하여 불합리할 때

(7) 試驗方法

(가) 必要한 試驗方法이나 根據資料가 누락되었을 때

(나) 提示된 根據資料와 相異하거나 根據資料가 不合理할 때

(8) 基準 및 規格 提出上의 留意事項

(가) 製品에 대한 一般成分 分析值가 누락되었거나 未備할 때

(나) 基準 및 規格變更時 이미 檢定을 했한寫本과 變更하고자 하는 事項의 對備表를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不合理할 때

(다) 原料構成, 用途, 目的, 劑形(品質保存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 除外) 등에 있어서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食品으로서 妥當性이 認定되지 아니할 때

(9) 其他

(가) 위 각항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것으로

當院 告示 第3號 “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”에 의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不合理할 때

(나) 위 각항의 檢討에 있어서 資料가 未備하거나 提出된 資料가 不充分하여 檢討에 어려움이 있을 때

나. 是 正

(1) 用語, 記號 또는 一般的의 記載要領을 公典에 準하지 아니하였을 때

(2) 內容上 단순한 脱字나 誤字등이 있을 때

(3) 成分名稱이 公典의 名稱 또는 根據資料와 相異하게 表示되었을 때

(4) 性狀이 試供品과 相異할 때

(5) 不必要한 規格基準이나 試驗方法의 刪除만으로 是正할 수 있을 때

(6) 成分規格中 硝素, 重金屬, 添加物 등의 設定值가 許容值를 超過하였을 때

(7) 위 각항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것으로 檢討結果 輕微한 事項으로 認定될 때

第70號 食品工業

1970年 10月 18日 登錄 바—第355號

1983年 8月 31日 發行(8月號)

發行兼
編輯人 許 昌 成

印刷人 鞠 正 鎬

發行處·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

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의 1

(進淨아파트 610호)

(265) 8760, (266) 6035

印刷處·正和印刷文化社 (隔月間·非賣品)

TEL (363) 4595·4596

□ 본지는 한국도서·잡지윤리위원회 실천강령을 준수한다.